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6-175호

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2호(2009.5.7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1-40호(2011.9.30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2-130호(2012.7.13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강북구 미아동 1,2,4,5번지 일대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2일

강 북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,2,4,5번지 일대
3. 시행면적: 36,410.00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대웅
5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2 청우빌딩 4층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
 - 최초인가일: 2012년 7월 13일
 - 변경인가일(1차): 2014년 7월 31일
 - 변경인가일(2차): 2015년 11월 12일
 - 변경인가일(3차): 2016년 11월 29일

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수	세대수	연면적(㎡)	비고
계		36,410.00	11	지하3층 / 지상15층	615	93,238.79	
공동주택 및 근린생 활시설	분양	28,124.78	10	지하3층 / 지상15층	510	82,732.70	
	임대	3,511.46	1	지하3층 / 지상13층	105	9,923.96	
	상가	198.76	분양아파트 내 1개층		-	582.13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(단위 : ㎡)

공급 대상	규모별 세대수 (전용면적 기준)													
	계	104.53	84.98A	84.98B	84.98C	84.97T	59.99	59.98	59.97	59.64	43.55	43.45	39.74	39.69
계	615	24	182	176	24	4	55	24	22	13	13	26	39	13
조합원	195	7	4	62	24	1	53	23	21					
보류 시설	2			2										
일반 분양	313	17	178	112		3	2		1					
임대 주택	105							1		13	13	26	39	13
근린 생활 시설	582.13㎡											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(공사중)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 변경 사항

1) 조합원 명의 변경

- 상속 또는 매도 등의 사유로 명의변경에 의한 조합원 명의변경

2) 건축시설 변경

- 건 폐 율 : 22.88% → 23.25%

- 건축면적 : 7,283.84㎡ → 7,401.58㎡

3) 임대아파트 매입비 변경

- 17,393,341,000원 → 17,850,669,000원

4) 일반분양가 일부 변경

5) 정비사업비 추산액 일부 변경

8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택과(☎ 901-682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